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-1054호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일정 등 공고

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4월 25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I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- 합격인원 : 308명
- 채용구분

합격 인원	공개경쟁		경력경쟁						구급 상황 관리
	소 방		구 급		구 조			자동차 정비	
	남 자	여 자	남 자	여 자	일 반	화생방	기관사		
308	170	30	52	15	23	7	9	0	2

※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(소방남자는 2배수)

- 합격자명단 : [붙임 1] 참조
- 성적열람 (불합격자에 한함)
 - 열람기간 : 2017. 4. 25.(화) 10:00 ~ 5. 8.(월) 18:00
 - 열람장소 :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(<http://fire.jinhakapply.com>)
 - 조회방법 :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성적 조회

II

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

- 응시대상 : 308명 (필기시험 합격자 전원)
- 시험기간 : 2017. 5. 10.(수) ~ 5. 11.(목) / 2일간
- 등록시간 : **해당 시험일 08:00 ~ 08:30** (08:30 이후 시험장 입장 불가)
 ※ 등록장소 :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(출입구 등록대)
- 시험장소 : 잠실종합운동장 - **[붙임 2]** 참조
- 일정구분

시험일	구 분		응시번호	응시대상	전체인원	도핑대상
	분 야	성 별				
5. 10.(수)	소 방	남 자	110006 ~ 111602	170	239	23
		여 자	120006 ~ 120318	30		
	구 조	일 반	310001 ~ 310113	23		
		화생방	410001 ~ 410026	7		
		기관사	510002 ~ 510025	9		
5. 11.(목)	구 급	남 자	210003 ~ 210150	52	69	6
		여 자	220018 ~ 220125	15		
	구급상황관리	720002 ~ 720003	2			

- 시험종목 (평가점수) : **[붙임 3]** 참조
- 측정방법 : **[붙임 4]** 참조
- 합격결정 : 6종목 점수 합산, 총점의 50%이상 득점시 합격 처리
- 응시자 준비물 : 응시표, 신분증, 운동복, 운동화, 도시락, 식수 등
 ※ 스파이크 신발 등 절대 착용 불가 (운동장 시설물 보호)
- 합격발표 : 2017. 5. 26.(금) /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(채용정보란)
- 응시자 유의사항
 - ① 응시자는 반드시 **응시표와 신분증**을 지참하고 **08:30분까지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출입구에서 등록 및 손목에 핸드링을 착용한 후 시험장에 입장**하여야 하며, **등록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**합니다.
 ※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(불합격 처리)

②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

- 가.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,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.
- 나.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응시대상의 10%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
※ 도핑테스트에 선정된 응시자는 **중도탈락, 포기**와 **상관없이** 도핑테스트에 응하여야 하며(서약서 작성), **무단이탈** 또는 **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- 다. 도핑테스트 시행절차,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[붙임 5] 참조
- 라. **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(양성) 판정 시** 소방공무원임용령 제 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**합격 결정을 취소하고**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「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」을 참조하여 충분한 연습(준비운동 포함)을 하시고, 체력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④ 체력시험일 오전에는 “악력·배근력·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·제자리 멀리뛰기·윗몸일으키기”를 실시하고, 중식 후 오후에는 “왕복오래달리기”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(중식 제공 없음, 응시자가 직접 준비)
※ 당일 체력시험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
- ⑤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불가하며, 우천 시에도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합니다.
※ 천재지변,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시험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변경된 시험 일정을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(채용정보란)에 공지하겠습니다.
- ⑥ 체력시험 진행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,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※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(응시포기서 작성 및 핸드링 반납)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.

- ⑦ 본 공고문 안내사항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, 시험관리관 지시에 불응하는 응시자,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응시자의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 받을 수 있으며,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붙임 1.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.
2.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장소 안내 1부.
3.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평가점수 1부.
4.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.
5.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1부. 끝.

□ 문의처 :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

- ▶ 전화 : 02) 2106-3621~5, FAX 02) 2106-3666
- ▶ 홈페이지 : <http://fire.seoul.go.kr/school>
- ▶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340길 29(서초동 391)
- ▶ 교통편 :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④번 출구(도보 15분)

□ 응시표 출력 및 성적조회 : (주)진학어플라이

- ▶ 홈페이지 : <http://fire.jinhakapply.com>
- ▶ 전화 : 1544-7715

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

소방(남) 170명 (1/2)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110006	○경○	36	110376	○상○	71	110737	○경○
2	110029	○근○	37	110380	○혁○	72	110742	○동○
3	110042	○지○	38	110386	○홍○	73	110745	○진○
4	110087	○성○	39	110389	○진○	74	110756	○일○
5	110090	○정○	40	110392	○재○	75	110757	○현○
6	110092	○형○	41	110401	○영○	76	110762	○병○
7	110106	○민○	42	110418	○수○	77	110791	○석○
8	110125	○정○	43	110420	○동○	78	110799	○승○
9	110132	○동○	44	110427	○현○	79	110802	○성○
10	110134	○준○	45	110440	○동○	80	110803	○종○
11	110135	○용○	46	110457	○희○	81	110810	○성○
12	110157	○현○	47	110472	○태○	82	110815	○선○
13	110174	○희○	48	110495	○승○	83	110835	○정○
14	110180	○준○	49	110503	○기○	84	110839	○종○
15	110184	○은○	50	110508	○현○	85	110841	○상○
16	110189	○웅○	51	110519	○준○	86	110886	○상○
17	110197	○민○	52	110536	○승○	87	110889	○상○
18	110217	○철○	53	110563	○해○	88	110911	○대○
19	110221	○선○	54	110572	○찬○	89	110935	○성○
20	110246	○다○	55	110573	○명○	90	110940	○우○
21	110256	○태○	56	110574	○진○	91	110954	○용○
22	110277	○기○	57	110578	○혜○	92	110964	○윤○
23	110285	○하○	58	110580	○성○	93	110966	○현○
24	110294	○지○	59	110594	○현○	94	110971	○현○
25	110295	○희○	60	110602	○현○	95	110972	○규○
26	110311	○강○	61	110626	○종○	96	110984	○호○
27	110313	○유○	62	110652	○성○	97	110989	○윤○
28	110323	○우○	63	110677	○희○	98	110993	○재○
29	110332	○근	64	110685	○용○	99	111000	○성○
30	110334	○성○	65	110686	○경○	100	111004	○다○
31	110343	○재○	66	110690	○형○	101	111005	○성○
32	110350	○영○	67	110691	○성○	102	111006	○용○
33	110351	○동○	68	110707	○현○	103	111010	○대○
34	110356	○현○	69	110709	○태○	104	111012	○정○
35	110359	○현○	70	110732	○상○	105	111016	○준○

소방(남) 170명 (2/2)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06	111017	○수○	128	111204	○상○	150	111408	○대○
107	111021	○성○	129	111209	○경○	151	111409	○현○
108	111026	○병○	130	111228	○홍○	152	111411	○낙○
109	111049	○성○	131	111253	○홍○	153	111424	○윤○
110	111069	○세○	132	111270	○현○	154	111442	○승○
111	111096	○현○	133	111279	○왕○	155	111446	○정○
112	111099	○성○	134	111293	○승○	156	111449	○준○
113	111102	○병○	135	111294	○태○	157	111470	○효○
114	111108	○재○	136	111305	○현○	158	111479	○용○
115	111109	○재○	137	111312	○우○	159	111485	○세○
116	111110	○종○	138	111315	○동○	160	111498	○동○
117	111119	○병○	139	111324	○종○	161	111501	○지○
118	111121	○태○	140	111326	○원○	162	111511	○인○
119	111131	○민○	141	111331	○규○	163	111520	○태○
120	111163	○경○	142	111341	○영○	164	111542	○동○
121	111164	○민○	143	111346	○환○	165	111548	○민○
122	111173	○혁○	144	111347	○경○	166	111566	○태○
123	111177	○성○	145	111358	○형○	167	111568	○지○
124	111180	○상○	146	111359	○현○	168	111570	○민○
125	111191	○수○	147	111375	○의○	169	111578	○신○
126	111200	○주○	148	111397	○태○	170	111602	○승○
127	111201	○학○	149	111403	○권○			

소방(여) 30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120006	○지○	11	120079	○혜○	21	120240	○진○
2	120010	○현○	12	120089	○민○	22	120247	○지○
3	120014	○진○	13	120146	○지○	23	120254	○보○
4	120025	○슬○	14	120155	○빛○	24	120255	○혜○
5	120031	○혜○	15	120172	○나○	25	120256	○아○
6	120042	○선○	16	120182	○희○	26	120275	○슬○
7	120058	○보○	17	120201	○지○	27	120284	○윤○
8	120059	○예○	18	120202	○도○	28	120307	○연○
9	120061	○승○	19	120223	○은○	29	120317	○은○
10	120076	○은○	20	120225	○지○	30	120318	○지○

구급(남) 52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210003	○동○	19	210066	○동○	37	210112	○인○
2	210011	○주○	20	210070	○준○	38	210117	○영○
3	210014	○용○	21	210071	○명○	39	210118	○수○
4	210015	○진○	22	210074	○성○	40	210119	○상○
5	210016	○기○	23	210077	○태○	41	210122	○지○
6	210019	○현○	24	210078	○정○	42	210123	○정○
7	210028	○종○	25	210080	○동○	43	210124	○창○
8	210036	○창○	26	210082	○균○	44	210125	○정○
9	210043	○성○	27	210083	○준○	45	210126	○석○
10	210044	○정○	28	210087	○지○	46	210128	○상○
11	210050	○경○	29	210089	○성○	47	210133	○효○
12	210052	○지○	30	210095	○정○	48	210135	○병○
13	210053	○봉○	31	210097	○윤○	49	210136	○세○
14	210058	○동○	32	210099	○정○	50	210145	○진○
15	210060	○성○	33	210101	○영○	51	210147	○조○
16	210063	○규○	34	210103	○재○	52	210150	○승○
17	210064	○윤○	35	210107	○우○			
18	210065	○정○	36	210110	○성○			

구급(여) 15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220018	○유○	6	220046	○희○	11	220104	○희○
2	220019	○연○	7	220049	○슬○	12	220112	○시○
3	220033	○궁○○	8	220055	○정○	13	220121	○아○
4	220036	○가○	9	220070	○길○	14	220124	○경○
5	220040	○샛○	10	220077	○인○	15	220125	○명○

구조일반 23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310001	○영○	9	310023	○형○	17	310081	○종○
2	310002	○강○	10	310026	○세○	18	310089	○기○
3	310006	○용○	11	310027	○성○	19	310090	○태○
4	310009	○준○	12	310028	○영○	20	310099	○승○
5	310014	○민○	13	310032	○하○	21	310104	○영○
6	310016	○성○	14	310054	○기○	22	310112	○재○
7	310018	○범○	15	310072	○택○	23	310113	○진○
8	310020	○창○	16	310073	○한○			

화생방 7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410001	○민○	4	410016	○민○	7	410026	○재○
2	410003	○현○	5	410020	○영○			
3	410008	○문○	6	410025	○정○			

기관사 9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510002	○지○	4	510006	○문○	7	510016	○은○
2	510003	○용○	5	510007	○동○	8	510022	○근○
3	510004	○기○	6	510008	○종○	9	510025	○종○

구급상황관리 2명

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	연번	응시번호	성명
1	720002	○유○	2	720003	○정○			

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장소 안내

□ 시험장소

- 장 소 : 잠실종합운동장
- 주 소 :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(잠실동10)



□ 교통편

- 지하철 : 2호선 종합운동장역 6번, 7번 출구
- 버 스
 - 초록(지선) : 2415, 3217, 3411, 3412, 3414, 3417, 3418, 3422, 4319
 - 파랑(간선) : 01, 333, 341, 350, 351, 360, 362, N13(심야)
 - 빨강(직행) : 1100, 1700, 2000, 7007, 8001, 6900, 2000-1
 - 일반버스 : 11-3, 917
 - 공항버스 : 6000, 6006

체력시험의 종목 및 평가점수

□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

종목	성별	평가점수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
악력 (kg)	남	45.3~ 48.0	48.1~ 50.0	50.1~ 51.5	51.6~ 52.8	52.9~ 54.1	54.2~ 55.4	55.5~ 56.7	56.8~ 58.0	58.1~ 59.9	60.0 이상
	여	27.6~ 28.9	29.0~ 30.2	30.3~ 31.1	31.2~ 31.9	32.0~ 32.9	33.0~ 33.7	33.8~ 34.6	34.7~ 35.7	35.8~ 36.9	37.0 이상
배근력 (kg)	남	147~ 153	154~ 158	159~ 165	166~ 169	170~ 173	174~ 178	179~ 185	186~ 194	195~ 205	206 이상
	여	85~ 91	92~ 95	96~ 98	99~ 101	102~ 104	105~ 107	108~ 110	111~ 114	115~ 120	121 이상
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(cm)	남	16.1~ 17.3	17.4~ 18.3	18.4~ 19.8	19.9~ 20.6	20.7~ 21.6	21.7~ 22.4	22.5~ 23.2	23.3~ 24.2	24.3~ 25.7	25.8 이상
	여	19.5~ 20.6	20.7~ 21.6	21.7~ 22.6	22.7~ 23.4	23.5~ 24.8	24.9~ 25.4	25.5~ 26.1	26.2~ 26.7	26.8~ 27.9	28.0 이상
제자리 멀리 뛰기 (cm)	남	223~ 231	232~ 236	237~ 239	240~ 242	243~ 245	246~ 249	250~ 254	255~ 257	258~ 262	263 이상
	여	160~ 164	165~ 168	169~ 172	173~ 176	177~ 180	181~ 184	185~ 188	189~ 193	194~ 198	199 이상
윗몸 일으 키기 (회/분)	남	43	44	45	46	47	48	49	50	51	52 이상
	여	33	34	35	36	37	38	39	40	41	42 이상
왕복 오래 달리기 (회)	남	57~ 59	60~ 61	62~ 63	64~ 67	68~ 71	72~ 74	75	76	77	78 이상
	여	28	29~ 30	31	32~ 33	34~ 36	37~ 39	40	41	42	43 이상

※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
(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규정)

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악 력 (k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스메들리(smedley)식 악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: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,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배 근 력 (k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배근력계 ○ 측정 단위 : kg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°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.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(cm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(전자식 측정기 가능), 매트 1개 ○ 측정 단위 : cm ○ 측정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.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. -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. - '시작'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. -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. -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. -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 ※ 유의사항 :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.

종 목	측 정 방 법 등
<p>제자리 멀리뛰기 (cm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구름판 및 모래터(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)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○ 측정 기록 : cm ○ 측정 방법 :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(신체의 어느 한 부분)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<p>윗몸 일으키기 (회/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 : 매트(윗몸일으키기대,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○ 측정 기록 : 회 ○ 측정 방법 :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° 이상 일으킨다.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.
<p>왕복오래 달리기 (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측정 장비(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 길이 20m,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-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-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- 녹음 CD : 별도 ○ 측정 기록 : 단위(회) ○ 측정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. - 출발신호원의 '출발'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. -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'출발'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-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. -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. -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.

비 고 :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(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)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.

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

□ 도핑테스트 시행안내

-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,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(도핑테스트)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□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
-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,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(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-7호)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(붙임 5-2 참고)

□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

-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

- 채취된 소변 시료(A, B)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,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,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로 나온 경우,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,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울특별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.
-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,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,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,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,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.
-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,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□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

- **(의의)**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(신청절차)**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(붙임 5-3)을 작성,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(단, 치료목적 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)
- **(승인기준)**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.

- ▶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.
- ▶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.
- ▶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.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**동의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**동의서(붙임 5-1)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,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에는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.

- 붙임 5-1. 응시자 대상 검사 동의서 (**시험운영본부에서 동의서 준비**)
 5-2.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 3-3.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

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
I. 금지약물

○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.

1. 동화작용제 :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⁾

가.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AAS)

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(Exogenous AAS)

- ▶ drostanolone ▶ methenolone
- ▶ methasterone(17 β -hydroxy-2 α ,17 α -dimethyl-5 α -androstan-3-one)
- ▶ stanozolol
- ▶ 1-testosterone(17 β -hydroxy-5 α -androst-1-en-3-one)

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Endogenous AAS)

- ▶ testosterone

나. 기타 동화작용제 : Clenbuterol

2. 이뇨제 : 총 3종

- ▶ hydrochlorothiazide ▶ chlorothiazide ▶ furosemide

3. 흥분제 : 총 3종

- ▶ methylhexaneamine(dimethylpentylamine)
- ▶ methylephedrine ▶ ephedrine

※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.

1)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

4. 마약류 : 총 11종

▶Buprenorphine	▶dextromoramide	▶diamorphine(heroin)
▶fentanyl 및 유도체	▶hydromorphone	▶methadone
▶morphine	▶oxycodone	▶oxymorphone
▶pentazocine	▶pethidine	

II. 금지방법

-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(소변 바꿔치기 및/또는 섞기,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.)

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

1. 응시자 인적사항

1. 성명: _____	2. 성별: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
3. 생년월일: _____	4. 응시번호: _____
5. 핸드폰: _____	6. 이메일: _____

2. 의료정보

1)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

2)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,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

※ **진단증빙자료(진단서, 처방전, 소견서 등)를 첨부**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,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,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,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.

3. 세부 진료내용

금지약물	1회 사용량	사용방법	사용빈도
1.			
2.			
3.			

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:	1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응급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(주/월) _____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4. 담당의사 서약

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,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.

성명: _____ 전공분야: _____

주소: _____

전화: _____ 팩스: _____ 이메일: _____

서명: _____ 날짜: _____

5. 응시자 서약

본인, _____는(은)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.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,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.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.

서명: _____ 날짜: _____

부모/보호자 서명: _____ 날짜: _____

(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.)

※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,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.
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.